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3.

발 의 자 : 이용우·김남근·신장식  
이기현·임미애·허종식  
박 정·이학영·손 솔  
김태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,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.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지위가 개인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,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.

또한, 「근로기준법」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,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이 행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(법인대표 포함)의 친족인 근로자가

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,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12조, 제13조 및 제39조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사업주·상급자”를 “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, 상급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사업주”를 “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(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사업주 및”을 “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2항 중 “사업주”를 “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<p>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사업주 및 근로자</u>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제39조(과태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사업주</u>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9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